
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(전은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78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2.

발 의 자 : 전은수 · 김남근 · 한민수
허 영 · 김정호 · 문진석
임미애 · 김영진 · 김영배
한창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건강가정에 관한 기본계획이 각각 수립·시행되고 있어 가족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 간 연계와 수요자 중심의 통합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유사한 정책이 별도로 수립되는 한계가 있음.

이에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,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5조5, 제5조의6).
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5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기본계획은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제5조의6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시행계획은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5(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	제5조의5(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이 경우 기본계획은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제5조의6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· 시행 등) ① 성평등가족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·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	제5조의6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· 시행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이 경우 시행계획은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